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1260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박한결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3. 4.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3. 4. 21. 접수 제49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7. 30. B과 보증금액 1,9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상환을 지체하여 2023. 5.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3. 10. 17. B을 대신하여 C은행에 19,601,222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23. 4. 20. 친구인 피고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23.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C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B 대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2,623,6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C은행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 합계 55,96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 1명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와 B의 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별지